

『2026년 스포츠산업 창업도약센터』 창업기업 모집 공고

급변하는 스포츠산업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창업기업이 데스밸리를 탈출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2026년 스포츠산업 창업도약』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스포츠산업분야 초·중기 창업기업의 성장, 도약을 위한 사업화 지원 및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 기여
- 지원대상:**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기업 또는 타 창업지원사업 수료 이력이 있는 3년 미만 창업기업
- 지원규모:** 총 14개사

창업도약센터	대구테크노파크
지원규모	전국 14개사 (비수도권 기업 50% 이상 선발)

- 지원기간:** 2026.4~12월(약 9개월)

지원내용

- ① 사업화지원금 **최소 3,500만원~최대 6,500만원(평균 5,000만원)**

※ 선정기업은 사업화지원금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시 자기부담금 선집행

※ 사업화지원금 사용가능 비목 및 유의사항 등은 [붙임2] 참고

- ② 창업도약센터별 창업 교육 및 보육 특화프로그램 제공

※ 창업지원센터별 특화프로그램이 상이하므로 [붙임3] 참고

2

신청 및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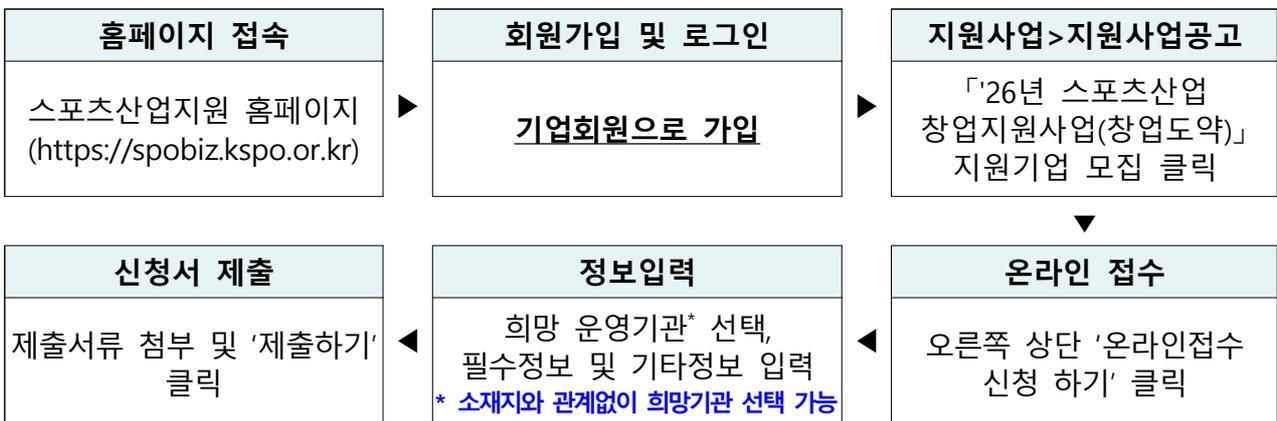
□ 신청자격

- ①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인 자
- 업력기준: 2019년 3월 10일(포함)~2023년 3월 9일(포함) 이내 창업한 자
- ②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타 창업지원사업(정부 부처, 지자체 모두 포함)을 수료한 이력이 있는 3년 미만 창업기업
- 업력기준: 2023년 3월 10일(포함) 이후 창업한 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6년 3월 9일(월)~3월 24일(화), 16:00까지
* 16:00 정각 전 제출완료 필수
- (신청방법) 스포츠산업지원(<https://spobiz.kspo.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 후 보완방법: 마이페이지 > 지원신청 현황 > 접수한 공고 클릭 > 보완하기 및 보완 사유 입력 > 접수한 공고 재클릭 > 서류보완 및 제출하기 클릭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공통(신청서)	①사업신청서 1부(서명) ②사업계획서 1부(1. 창업아이템 개요 파트부터 10페이지 이내) ③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동의 및 서명) ④신청서에 작성된 수상내역, 경력사항, 가 점 등 해당 관련 기타 증빙서류	○ 신청서 서명 ○ 10페이지 미준수 시 감점가능 ○ 동의 및 서명확인 ○ 증빙 미제출시 불이익 가능
타 창업지원사업 이력이 있는 3년 미만 기업으로 지원 시	①창업지원사업 보육 증빙서류(수료증, 협약서 등) 1부	

※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로 필히 업로드

- 서류평가 합격시 추가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공통(서류평가 합격시)	①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②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③2025년 12월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1부 ④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확인서 1부	

○ (문의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증빙서류 관련 문의

창업도약센터	선발규모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대구테크노파크	14개사	053-795-9746	kino43@dgtp.or.kr

※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업지원팀 02-410-1757/1753

<p><신청 및 접수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의 운영기관만 선택하여 신청가능 ○ 반드시 지원받고자 하는 본인 및 해당 사업자로 회원가입, 지원사업 신청 필수 ○ 자격요건 부합 시 타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선정 시 최종 1개 지원사업만 선택 ○ 신청·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스포비즈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보완하기 포함)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마감시간 정각에 맞추어 제출 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소 10분 전 신청(보완하기 포함)완료 권장하며, <u>마감시간 임박시 시스템 에러 등의 사유로 미 접수시 접수불가능 양지</u>

3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평가방식)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및 최종선정
- (평가위원) 센터별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항목) 사업역량 및 계획 등을 평가하며 센터별 자율지표 추가 가능

<서류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사업역량	보유 역량, 참여의지, 개발동기	15
사업계획	사업계획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네트워크 확보계획 (투자, 거래처, 전문가 등)	40
사업모델	아이템 및 기술차별성, 시장 진입·선도·확대 가능성, 수익 및 고용창출가능성 등	30
기대효과	스포츠산업 분야 성장가능성 및 파급효과	15
합 계		100

<발표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사업역량	경영진의 보유역량, 사업화 의지, 개발동기	15
사업모델	아이템 및 기술차별성 및 구현가능성, 시장 진입·선도·확대 가능성, 수익 및 고용창출가능성	30
성장전략	자금조달 계획, 대내외 협력방안	20
성장가능성	BM확장성, 투자유치, 성장·글로벌 진출 가능성	20
기대효과	스포츠산업 분야 성장가능성 및 파급효과	15
합 계		100

※ 1차 서류평가 시 최종 선정기업수의 2배수 선정(접수기업이 2배수 미달 시 전체 발표)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모두 최고값, 최저값을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필요한 경우 운영기준에 반하지 않는 내에서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서류평가 가점항목

- '24년·'25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결선진출 장려상(3등) 2팀 서류면제 (1회에 한함)
- '25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예비초기·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수료기업(3점)
- 최근 3년이내 SKL에 만 2년 이상 입주한 기업(졸업기업 포함) 3점
- 우수 스포츠용품 선정 기업(3점)

※ **우선선정 대상자** * 서류 및 발표평가 면제

- '24년·'25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결선진출 최우수상(1등) 1팀, 우수상(2등) 2팀 (1회에 한함)
- '25년 창업도약지원사업 우수수료기업(3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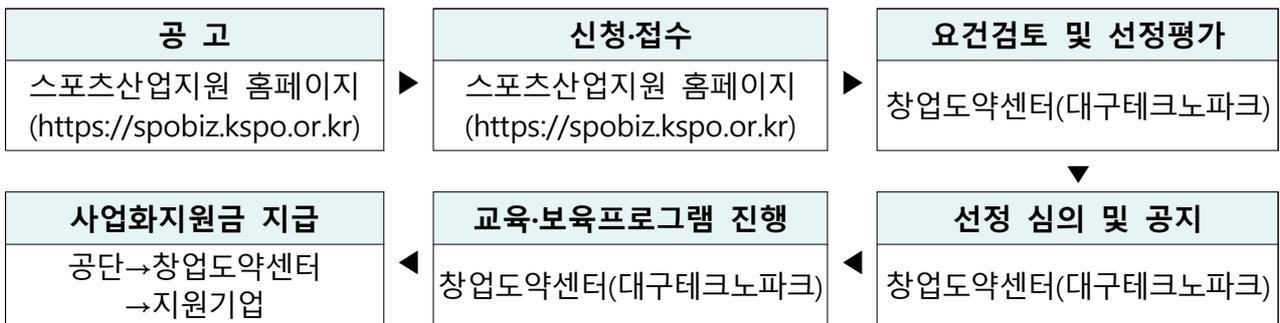
□ **평가일정** ※ 하기 일정은 운영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서류평가) ~'26.4.3(금) 예정
- (발표평가) '26.4.6(월)~13(월) 예정
- (최종선정) '26.4.24(금) 예정

※ 각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개별 결과 안내(이메일 등) 예정

4 기타 안내

□ **세부 추진절차**



□ **유의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및 이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창업도약 지원사업을 수료한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2026년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붙임1]

※ 선정 완료 후 타 부처의 창업지원 사업에 신청/선발 지원 가능(단, 해당 부처의 창업지원 사업이 중복수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같은 항목에 대한 중복수혜는 불가)

- 사업화지원금을 제공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타 기업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자격요건 부합 시 여러 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은 1개 사업만 가능하므로 되도록 1개 사업에 신청 권장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이의제기는 최종 선정결과 안내 후 1회에 한해 창업센터에 제기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지침·기준 및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창업자에게 있음

□ 의무사항

- 선정자는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운영기관이 진행하는 교육·보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야 함
- 선정자는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 재정경제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
-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기준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붙임1] 중복수혜 불가 정부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 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 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3	• 창업도약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4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5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창업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
6	• 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7	• 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8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9	• 제품화 ALL-In-One 팩	중소벤처기업부
10	• 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11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12	•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3	•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4	•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5	•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6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7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18	•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19	•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0	• 스포츠산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1	• 스포츠산업 (예비)선도기업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2	• (콘텐츠)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3	•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4	• (콘텐츠) 투자 연계 창업도약	문화체육관광부
25	•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통일부
26	• 소규모 신규 창업자 지원사업	통일부
27	• 해양수산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
28	•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산림청
29	•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30	•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드론평화 창업 지원사업	방위사업청
31	• 유망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상기 목록 외 중앙정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금 유형) 중복 수혜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전 문의 요망(02-410-1757/1753)

[붙임2] 사업화 지원금 사용가능 비목 지급기준 및 유의사항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증빙서류						
인건비	인건비	1. 운영기관과의 지원사업 협약 이후 해당 창업사업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신규고용 전문인력 인건비(대표자, 일반 사무행정 제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급기준(연간)</th> </tr> </thead> <tbody> <tr> <td>제조업</td> <td>법정최저~50,430천원</td> </tr> <tr> <td>스포츠 서비스업</td> <td>법정최저~42,208천원</td> </tr> <tr> <td>정보통신업</td> <td>법정최저~61,592천원</td> </tr> </tbody> </table> ※ 고용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산업별 상용임금 평균액 기준 2.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의 경우도 고용 유지 기간요건 충족 필수)도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시 집행 가능 3.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급여 이체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협약종료일 이후 발급), 전문인력 업무참여 내역, 이력서 등 업무관련 학위·경력 증빙서류, 급여 이체내역 <유의사항> 1. (삭제) 1. 지원금의 40% 이내 편성 제한 2. 사업협약 종료 시점까지 고용유지 시 연말 일괄 신청 및 지급 (협약종료 해당월 급여이체 완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협약종료일 이후 발급) 등 제출) 3. 창업지원사업 보육팀(기업)만 해당되며 엑셀러레이터 지원기업은 집행 불가 ※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 준수	구 분	지급기준(연간)	제조업	법정최저~50,430천원	스포츠 서비스업	법정최저~42,208천원
구 분	지급기준(연간)							
제조업	법정최저~50,430천원							
스포츠 서비스업	법정최저~42,208천원							
정보통신업	법정최저~61,592천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인쇄물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의 제작비(굿즈, 전시회 기념품 등 홍보용 배포 물품 제외)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공급가액 개당 50만원 이내의 소모성 물품) 5.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인증비, 회계감사수수료 6.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 등 전문가 자문료 * 대행수수료 집행 가능, 성공보수 집행은 불가 - 창업 아이템과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관납료 제외) 7. 광고료 : 지원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등 8.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지급수수료)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 멘토링비 집행불가 <증빙자료> (공통) 사업계획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견적서, 비교견적서 2부 이상 및 계약서(계약인 경우), 검수조서(사진포함, 50만원 이상) (지재권 등) 출원번호통지서(출원사실증명원) 등 (광고료) 결과보고서(결과물)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증빙서류
		<p>(참가비) 전시회·박람회 카달로그, 참가 확인서, 참가비 영수증, 결과보고서(행사개요, 추진성과, 사진 등)</p> <p>(시험/인증비) 계약서, 시험/인증서</p> <p>(멘토링비) (삭제)</p> <p><유의사항></p> <p>1. 지재권 등</p> <p>① 대행수수료는 집행 가능하나 성공보수 집행은 불가</p> <p>② 협약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집행 불가(협약 이후 출원 건에 대하여 집행 가능)</p> <p>③ 출원(등록)인은 지원기업 명의만 가능(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명의로 불가능), 다만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명의로만 가능</p> <p>④ 공동출원(등록)의 경우 출원 및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비용부담</p> <p>2. 광고료</p> <p>① 광고선전을 위해 외주용역하는 경우 일반용역비 기준 준용</p> <p>② 협약기간 내 홍보, 제작 등이 완료된 건만 지출 가능</p> <p>3.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구입비</p> <p>① 공급가액 개당 5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 불가(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p>
	임차료 *지원금의 20% 이내 편성 제한	<p>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p> <p>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p> <p>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p> <p>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p> <p>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일회성 행사 등) *월렌트, 장기리스 등 집행불가</p> <p><증빙자료></p> <p>(공통) 계약서(임(전)대차계약서 또는 공유오피스 관리용역계약서 등), 견적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전자세금계산서</p>
	교육훈련비	<p>지원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p> <p><증빙자료></p> <p>교육설명자료, 교육참가 신청서(참가 전 발급), 교육자료, 영수증(입금증), 교육 이수증, 임직원 확인을 위한 4대보험가입자명부</p> <p><유의사항></p> <p>1.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하는 교육의 '본인부담금'은 사업비 집행 불가, 교육비 환급 과정 교육 참가 시 환급금액 제외 금액만 지급 가능</p>
	재료비	<p>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p> <p>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p> <p>-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p> <p>-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p> <p>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등</p> <p><증빙자료></p> <p>세금계산서, 비교견적서 2부 이상 및 계약서 (계약인 경우),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p> <p><유의사항></p>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증빙서류
		자산성을 띠는 완성품의 경우 사업화 특성상 재료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는 자산으로 취급되어 집행 불가
	일반용역비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선금집행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선금금이행보증보험 등 수취
		<유의사항> 1. 외주용역 실행 시 해당 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제작 경험을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 2. 용역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금금, 잔금) 할 수 있으나 중도금의 경우 과업수행한 만큼의 비용 증빙(세금계산서) 필요 3. 용역파기 시 발생하는 기 지급한 선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집행 불가

※ 회의비, 여비, 자산취득비 사용불가

[붙임3] 창업도약지원센터별 특화프로그램(요약)

기관명	(재)대구테크노파크		
기관형태	공공기관	소재지	대구광역시
센터유형	<input type="checkbox"/> 일반형(전국 기업 모집)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역형(비수도권 기업 50% 이상 선발)		

[기관 특장점 등 자율작성]

AI-데이터 기반 스포츠테크 스타트업 성장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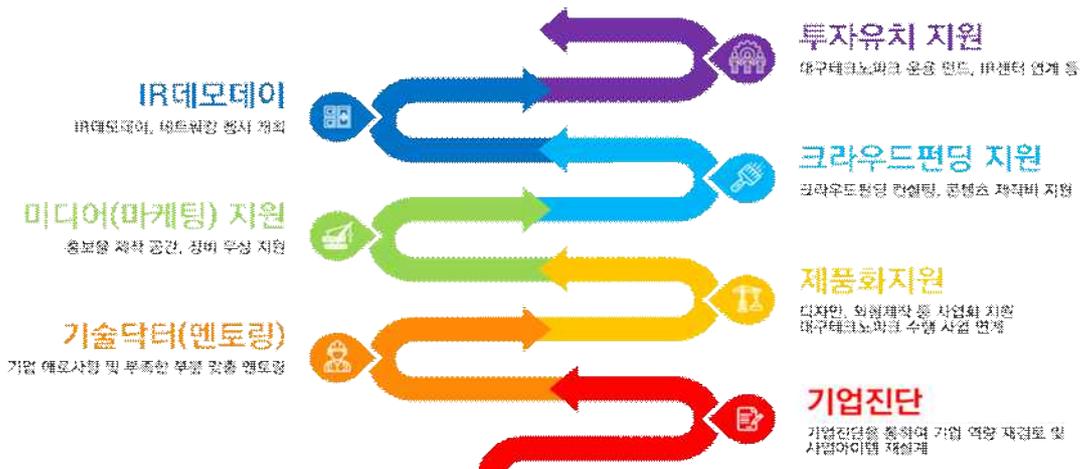
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투자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창업지원 전문기관
AI-데이터 기반 기술 인프라, 스포츠 실증 환경을 통한 스포츠테크 기업 성장의 체계적 지원

[교육 프로그램]

구분	교육 주제	추진시기	교육시간/일	비고
필수	창업초기 기본교육(기본)	4월	7h	온라인교육
필수	창업초기 기본교육(심화)	4월	7h	온라인교육
필수	창업초기 기본교육(성장)	4월	7h	온라인교육
필수	창업성장 레벨업 교육(일반/투자)	5월	6h	집합 교육
필수	창업성장 레벨업 교육(AI/블록체인)	6월	6h	집합 교육
필수	창업 실습 교육(GPU, 메인넷 실습)	8월	6h	집합 교육
선택	수요기반 자율 교육	-	-	선택 교육

[보육 프로그램]

스포츠산업 글로벌 창업선도기업육성



- AI-데이터·블록체인 기반 스포츠테크 기술 환경 지원**
 - 보유/운영 중인 GPU 서버, 블록체인 플랫폼 활용 스포츠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
- 스포츠 테스트베드 실증 지원**
 -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관련 인프라(장비, 시설, 유관기관 등) 활용 제품 테스트 및 서비스 실증 지원
-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연계**
 - CES 등 국내외 글로벌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진출 프로그램 연계 지원
-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연계**
 - TP 수행사업 연계 R&D, 사업화, 기업성장 프로그램 후속 지원